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앵커사업·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사업 참여 활동과 지산학관민연 협력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활동의 업적 반영, 변별력을 상실한 집단지표 재설계,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 교원의 대체 경로 마련 및 교수업적평가위원회·교원 의견수렴 결과 반영

3. 주요내용 :
 - 교수업적평가 종합표 수정(교육영역 180→170점, 산학협력영역 110→120점, 총점 500점 유지)
 -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 교원의 집단지표 점수 신설(항목별 학과 점수 평균의 50%)

 - 교육영역
 1) 강의평가 배점 조정(50→40점)
 2)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배점 조정(과목당 2점, 상한 6점) 및 운영 위반 감점 신설
 3)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시간당 배점 상향(0.5→1점)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강의·지도 인정(건당 3점)
 4) 재학생 충원율·중도탈락률을 재학생 등록유지율(정원외 포함)로 대체, 신입생 충원율 배점 상향(최저 구간 기본점수 10점) 및 정원외 입학자 산입 기준(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 신설
 5) 학생성공 지도 신설(위험학생 멘토링,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지도 포함)
 - 산학협력영역
 1) 국고지원사업 연계 부문 신설(활동 형태에 따라 G1 강의·운영, G2 개발, G3 협력, G4 사업 운영 책임의 4유형, 상한 합계 62점) 및 제9조 구조 정비(5개 부문)
 2) 학과취업 상승률 폐지·학과 취업률 구간 재설계, 지도학생 취업률 정정, 학생취업지도·지역정주 취업 가산 신설
 3) 사문화 항목 통합 및 부문 합산 상한의 항목별 상한 전환
 4) 지역연계의 협력 상대를 공공기관·연구기관·지역 민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로 확장
 5) 실적 인정 원칙(실질 참여, 명의 대여 불인정) 및 참여기회 배정 원칙(공개 배정,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 교원 우선 배정) 신설

- 연구영역: 국제학술지를 SCI(E)·SSCI·A&HCI·Scopus 등재지로 한정(200점), 상한 초과 실적의 특별가산점 인정
- 봉사영역: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 배점 상향, 별도과정 운영 확대(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 대면·온라인 구분, 운영 학과장 인정), 교내 위원회 참여에 국고지원사업 위원회 포함, 대학발전 프로젝트 인정범위 명시
- 특별가산점·특별감점: 연구업적 상한점수 초과분 가산 신설, 학기 중 국외여행 감점 기준 정교화(허가받은 여행 감점 행 삭제, 무허가 출국·허가 기간 초과·허가 조건 위반 시 복무 위반 감점, 학기당 누계 15일·2회 허가 원칙·보강 필요 시 불허, 공무 국외여행 제외)
- 보칙 장 번호 정비, 부칙(시행일·적용례)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공포일부터 시행(개정 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부터 적용)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동시 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해당 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마. 규정류(제정·개정)안 전문

2026년 10 월 1 일

소관부서 : 교무처

관련부서 :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th></tr>
<tr>
<td>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평가영역 구분) (생략)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배분)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평가영역별 점수 배분은 <표 1>과 같으며 4개 영역의 점수합계는 500점으로 하며, 각 영역별 점수는 해당 영역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

<표 1> 교수업적평가 종합표 (개정 2024.12. 1.)

영역	부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교육	강의	강의시수	-5~10	개별	교무처
		주당강의일수	-5	개별	교무처
		강의계획서 및 성적	-5	개별	교무처
		휴보강	-5	개별	교무처
		강의평가	50	개별	교무처

</td>
<td>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영역 구분) (현행과 같음)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배분)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평가영역별 점수 배분은 <표 1>과 같으며 교육영역 170점, 산학협력영역 120점, 연구영역 110점, 봉사영역 100점으로 하여 4개 영역의 점수합계는 500점으로 하며, 각 영역별 점수는 해당 영역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가산점은 4개 영역의 점수합계와 별도로 가산하고, 특별감점은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개정 2020.12.22.),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표 1> 교수업적평가 종합표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교육	강의	강의시수	-5~10	개별	교무처
		주당강의일수	-5	개별	교무처
		강의계획서 및 성적	-5	개별	교무처
		휴보강	-5	개별	교무처
		강의평가	40	개별	교무처

</td>
<td>

- 영역별 배점을 조문에 명시하고 교육영역 180→170점(강의평가 50→40점), 산학협력영역 110→120점(국고지원사업 연계 부문 신설)으로 조정, 총점 500점 유지
- 특별가산점·특별감점의 총점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고 연구영역 상한 초과 실적을 특별가산점에 추가

</td>
</tr>
</table>

현 행

영역	부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성적정정	-5	개별	교무처
	교육과정운영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5	개별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수 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10	개별	관련 부서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25	개별	학생상담센터
		교과외 학생지도	10	집단	학생지원처
		재학생 충원율	30	집단	교무처
		중도탈락률	20	집단	교무처
		신입생 충원율	20	집단	입학처
	계		180		
산학협력	산학협력연구	산관학연구보고서/기술이전/특허/산관학연구비수혜/교원창업/학교기업/제품인증/간접연구비기여 등	20	개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교육및창업	산학교육프로그램운영	20	집단	산학협력처
		현장실습지도(상한점수 10점)		개별	현장실습지원센터
		학생창업지도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캡스톤 디자인 지도		개별	교무처 산학협력처
		일학습병행 지도		개별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개 정 안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성적정정	-5	개별	교무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혁신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6	개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운영규정·저작권 위반, 운영보고서 미제출 감점	-8	개별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수 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지도	10	개별	관련 부서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25	개별	학생상담센터
		교과외 학생지도	10	개별	학생지원처
		학생성공 지도	10	개별	관련 부서
		재학생 등록유지율	35	집단	교무처
		신입생 충원율	35	집단	입학처
	계		170		
산학협력	산학협력연구	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관학·산학연구보고서, 국비사업 계획·성과보고서)	20	개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기술실적(특허·신기술인증·기술이전 통합)	10	개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교육및창업	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20	개별	산학협력처
		현장실습지도	14	개별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지도(교원	10	개별	취·창업

- 평가단위 표기 정정: 교과외 학생지도·산학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개인 실적으로 산정(제8조③·제9조② 단독활동 기준)하므로 집단→개별

현 행

영역	부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취업	학과취업 상승률	10	집단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취업지도 결과(취업률)	40	개별, 집단	취·창업지원센터
	산업체및지역연계	산학협력협약	20	개별	산학협력처
		<신설> 지역연계		개별	산학협력처
		경영·기술자문		개별	산학협력단
	계		110		
연구	연구및창작활동	논 문	110	개별	교무처
		저 서		개별	
		학술발표		개별	
		문학·예체능		개별	
	계		110		
봉사및기타	교내봉사		50	개별	관련부서
	교외봉사		20	개별	교무처
	학사참여도	대학행사	20	개별	교무처
		학과행사	10	개별	학과장

개 정 안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창업·경진대회·동아리·학교기업 통합)			지원센터
		캡스톤·PBL 지도	9	개별	교무처·산학협력처
	국고지원사업연계	G1 국고지원사업 강의·운영	12	개별	산학협력단·교무처
		G2 국고지원사업 개발	15	개별	산학협력단
		G3 국고지원사업 협력	15	개별	산학협력단
		G4 국고지원사업 운영책임	20	개별	산학협력단
	취업	학과 취업률(집단)	33	집단	취·창업지원센터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2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취업지도(행사·프로그램)	15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지역정주 취업 가산	1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산업체 및 지역연계	산학협력협약(신규 체결·협약업체 실질운영)	20	개별	산학협력처
		지역연계(지산학관민연 협약 3점·실질사업 7점)	20	개별	산학협력처
	계		120		

현 행	개 정 안	

영역	부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계		100		
합 계			500		

제4조(평가항목의 구분) ① · ② (생략)

<신 설>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연구	연구 및 창작 활동	논 문	110	개별	교무처
		저 서		개별	
		학술발표		개별	
		문학·예체능		개별	
	계		110		
봉사 및 기타	교내봉사		50	개별	관련 부서
	교외봉사		20	개별	교무처
	학사 참여도	대학행사	20	개별	교무처
		학과행사	10	개별	학과장
	계		100		
합 계			500		

※ 각 영역의 항목별 상한점수 합계는 영역 상한을 초과할 수 있으며, 영역별 취득점수는 영역 상한을 한도로 한다.

제4조(평가항목의 구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 2026.00.00.)

③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등)의 교원에 대한 재학생 등록유지율, 신입생 충원율 및 학과 취업률 점수는 항목별

- 제4조: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등) 교원의 집단지표(재학생 등록유지율·신입생 충원

현 행	개 정 안	

현 행

	항 목	건당 점수	평가 단위	평가부서
특별가산점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	10	개별	교무처
	교내 표창	5	개별	
	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로부터의 수상	5	개별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3	개별	
	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	3	개별	
	발전기금 기부·유치	연봉액의 1%당 2점 (상한점수 20점)	개별	기획처

개 정 안

	항 목	건당점수	평가 단위	평가부서
특별가산점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	10	개별	교무처
	교내 표창	5	개별	
	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로부터의 수상	5	개별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3	개별	
	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	3	개별	
	발전기금 기부·유치	연봉액의 1%당 2점 (상한점수 20점)	개별	기획처
	연구업적 상한점수(110점) 초과분	초과분 매 40점당 5점 (상한점수 20점)	개별	교무처

로 해당 평가주기 학과 점수 평균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6. 00. 00.>

율·학과 취업률) 점수를 항목별 학과 점수 평균의 50%로 신설(2025학년도 기준 약 24점) - 학과 지표가 없는 교원의 구조적 공백 보완

현 행					개 정 안					
	항 목	건당 점수	평가 단위	평가부서		항 목	건당 점수	평가 단위	평가부서	
특별감점	정직(중징계)	-20	개별	교무처	특별감점	정직(중징계)	-20	개별	교무처	
	감봉(경징계)	-15	개별			감봉(경징계)	-15	개별		
	견책(경징계)	-10	개별			견책(경징계)	-10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8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8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	-5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	-5	개별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	-5	개별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	-5	개별		
	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5	개별			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국외여행 허가 기간 초과·허가조건 위반(결강 발생)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5	개별		
	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강 등 발생 시	-5	개별			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강 등 발생 시	-5	개별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	-3	개별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	-3	개별		
	학사일정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 시	-3	개별			학사일정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 시 <삭제>	- 3 <삭제>	개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개별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개별		

현 행

제2장 교육영역

제5조(교육영역의 평가부문) 교육영역은 강의부문과 교육과정운영부문, 학생지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6조(강의부문) ① 강의부문은 강의시수, 주당 강의일수, 강의계획서 및 성적, 휴·보강, 강의평가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2>와 같다. (개정 2022.1.1.)

<표 2> 강의부문 (개정 2024.12. 1.)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강의	강의시수	책임시수 1학점 초과 시 × 2	10	강의평가는 년간 4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합산한다.
		책임시수 1학점 미달 시 × -2	-5	
	주당 강의일수	의무강의편성 일수에 미달일수 × -2	-5	
	강의계획서 및 성적	강의계획서 및 성적평가 기간 내 미입력 과목수 × -2	-5	
	휴보강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휴보강 및 미보강 횟수 × -2	-5	
	강의평가	((4회 취득점수 합산)×1.25)/10	50	
	성적정정	성적정정기간 이후 성적정정 건수 × -2	-5	

② ~ ⑦ (생략)

개 정 안

제2장 교육영역

제5조(교육영역의 평가부문) 교육영역은 강의부문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학생지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6. 00.00.)

제6조(강의부문) ① 강의부문은 강의시수, 주당 강의일수, 강의계획서 및 성적, 휴·보강, 강의평가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2>와 같다. (개정 2022.1.1.)

<표 2> 강의부문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강의	강의시수	책임시수 1학점 초과 시 × 2	10	강의평가는 년간 4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합산한다.
		책임시수 1학점 미달 시 × -2	-5	
	주당 강의일수	의무강의편성 일수에 미달일수 × -2	-5	
	강의계획서 및 성적	강의계획서 및 성적평가 기간 내 미입력 과목수 × -2	-5	
	휴보강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휴보강 및 미보강 횟수 × -2	-5	
	강의평가	(4회 취득점수 합산)/10	40	
	성적정정	성적정정기간 이후 성적정정 건수 × -2	-5	

② ~ ⑦ (현행과 같음)

- 강의평가: 전 교원이 만점권(4개년 평균 46.9점)이어서 서열에 영향이 없는 배점을 50→40점으로 조정하고 산식을 (4회 합산)/10으로 단순화

현 행

제7조(교육과정부문) ① 교육과정 운영부문은 대학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교육과정운영부문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교육과정운영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교과목 수 × 5점	5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교내프로그램 참여시간당 × 0.5점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은 참여건당 2점	10	

② (생략)

③ 원격수업 교과목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러닝, 플립러닝을 의미한다.

④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는 교내 프로그램(교내 교육연수 포함)에 한하며,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시간 1시간당 0.5점을 인정하고,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인 경우 참여 건당 2점을 인정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7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은 대학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 운영, 교수역량 향상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참여·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3>과 같다. (개정 2026. 00.00.)

<표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개정 2026. 00.00.)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교과목 수 × 2점	6	
	원격수업 감점	원격수업 운영규정·저작권 관련 규정 위반 건당 -3점 운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건당 -2점	-8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지도	교내프로그램 참여시간당 × 1점,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은 참여건당 2점, 교내 교육프로그램 강의·지도 건당 3점	10	

② (현행과 같음)

③ 원격수업 교과목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러닝, 플립러닝을 의미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 등록된 교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2점을 인정한다. (개정 2026. 00.00.)

④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는 교내 프로그램(교내 교육연수 포함)에 한하며,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시간 1시간당 1점을 인정하고,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인 경우 참여 건당 2점을 인정한다. 교내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지도는 건당 3점을 인정한다. (개정 2026. 00.00.)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과목당 배점을 5→2점(상한 6점)으로 조정하고 운영규정·저작권 위반과 운영보고서 미제출 감점 신설
-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교내 프로그램 참여 시간당 0.5→1점, 교내 교육프로그램 강의·지도 건당 3점 인정(의견수렴 반영)

- 집단지표 재설계: 4개년 전수분석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재학생

현 행

제8조(학생지도부문) ① 학생지도 부문은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교과외 학생지도,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신입생 충원률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4>와 같다. (개정 2022.1.1.)

<표 4> 학생지도부문 (개정 2024.12. 1.)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지도배정인원 면담건수						25	
		면담건수	60건 이상	45건 이상	30건 이상	15건 이상	5건 이상		
		평가점수	25	20	15	10	5		
	교과외 학생지도	교내 동아리지도(일반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 5점/1개						10	
		학생외부활동지도, 교외 전국규모 각종대회, 발표회,전시회, 공모전들을 위한 특별지도 : 2점/건당							
	재학생 충원율	충원율	97% 이상	94% 이상	91% 이상	88% 이상	85% 이상	80% 이상	30
		평가점수	30	27	24	21	18	15	
	중도	탈락률	2%이	4%이	6 %	8%이	10 %		20

개 정 안

⑤ 원격수업 운영규정 또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당 3점, 원격수업 운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당 2점을 감점하며, 감점 한도는 8점으로 한다. <신설 2026. 00. 00.>

제8조(학생지도부문) ① 학생지도 부문은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교과외 학생지도, 학생성공 지도, 재학생 등록유지율, 신입생 충원율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4>와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6. 00.00.)

<표 4> 학생지도부문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지도배정인원 면담건수						25
		면담건수	60건 이상	45건 이상	30건 이상	15건 이상	5건 이상	
		평가점수	25	20	15	10	5	
	교과외 학생지도	교내 동아리지도(일반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 5점/1개						10
		학생외부활동지도, 교외 전국규모 각종대회, 발표회, 전시회, 공모전들을 위한 특별지도 : 2점/건당						

충원율·중도탈락률을 재학생 등록유지율(35점, 구간 95/90/85/80%)로 대체하고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20→35점(구간 100/90/80/75/70%)으로 상향. 두 지표 모두 최저 구간에 기본점수 10점을 두어 문턱-분포 괴리에 따른 0점 사문화를 방지

현 행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탈락률		하	하	이하	하	이하	
		평가점수	20	16	12	8	4	
	신입생충원율	충원율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20
		평가점수	20		15		10	

개 정 안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학생성공지도	학사경고·중도탈락 위험학생 멘토링, J-CAP 위험군 관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지도,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담당 학생 지도 : 1점/건당(주관부서 배정 실적)						10
	재학생등록유지율	정원내(외) 재학생수 ÷ 해당 학년도와 직전 학년도의 정원내(외) 입학생수 합계(3년제 학과는 직전 2개 학년도 포함) × 100, 정원외 학생은 제한없이 포함 (대학공시제, 교무처 현황 자료 기준;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						35
		등록유지율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평가점수	35	30	25	20	10	
	신입생충원율	[정원내 입학자수 + 정원외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 ÷ 정원내 모집인원 × 100(학과 단위, 입학처 현황 자료 기준;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						35
		충원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0% 미만
		평가점	35	30	25	20	15	10

현 행	개 정 안	
② (생략) ③ 교과외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각 학과별로 학과장을 경유한 활동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을 학생지원처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생략) ④ 재학생 충원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 기준으로 교무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2. (생략) 3. 신설학과 및 학년제 개편학과의 경우에는 편제 완성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재학생 충원률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1.1.) ⑤ 중도탈락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를 기준으로 교무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2. 중도탈락률은 제적률(자퇴, 미등록 제적, 미복학제적)을 말하는 것으로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 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 3. 신설학과 및 학년제 개편학과의 경우에는 편제 완성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재학생 충원률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1.1.) ⑥ 신입생 충원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2.1.1.) 1.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를 기준으로 입학처의 현황 자	<table><tr><th>평가부문</th><th>평가항목</th><th colspan="8">산출근거</th><th>상한점수</th></tr><tr><td></td><td></td><td>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② (현행과 같음) ③ 교과외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각 학과별로 학과장을 경유한 활동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을 학생지원처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전공동아리는 교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6. 00.00.) 3. (현행과 같음) ④ 재학생 등록유지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 00.00.) 1.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정원내·외 재학생수를 해당 학년도와 그 직전 학년도의 정원내·외 입학생수 합계(3년제 학과는 직전 2개 학년도를 포함한다)로 나눈 비율(%)로 하며, 정원외 학생은 제한 없이 포함한다.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 기준으로 교무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개정 2026. 00.00.) 2. (현행과 같음) 3. 신설학과 및 학년제 개편학과의 경우에는 편제 완성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재학생 등록유지율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1.1.), (개정 2026. 00.00.) ⑤ <삭제 2026.00. 00.>	- 신입생 충원율 산식: 정원외 입학자(유학생

현 행	개 정 안	
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2.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입학생 충원율)을 말하는 것으로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 <신 설>	⑥ 신입생 충원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2.1.1.) 1.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내 입학자수에 정원외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로 한다)를 더한 인원을 정원내 모집인원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를 기준으로 입학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개정 2026. 00.00.) 2.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 (개정 2026. 00.00.) ⑦ 학생성공 지도는 학사경고자·중도탈락 위험학생 멘토링, J-CAP 위험군 관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지도,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담당 학생 지도(담임·멘토·AA 지도는 학기별 학생당 2회 이상 상담한 경우 학생당 1건) 등 주관부서가 배정한 지도 실적을 건당 1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같은 상담 실적은 제2항의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00. 00.>	등)를 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에서 보충 산입하고 산식 상한을 100%로 하여 학과 간 유불리를 제한(교원 의견 반영).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재학생수를 해당·직전 학년도 입학생수 합계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원외는 제한 없이 포함 - 학생성공 지도 신설: 학과 지표와 짝을 이루는 개인 지도 실적(위험학생 멘토링,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지도 포함)을 인정하여 비학과 교원의 대체 경로 확보

현 행

제3장 산학협력영역

제9조(산학협력 영역의 평가) ① 산학협력영역은 본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수탁연구, 산학협력교육 및 창업, 산업체 연계 실적 등으로 평가하며 연간 총 110점을 배정한다. 그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5>와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표 5> 산학협력영역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 1.)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산학협력연구	산관학연구보고서	관학연구보고서 건당 20점	20
		산학연구보고서 건당 10점	
	기술이전	100 만원당 1점	
	특허	국제특허 건당 20점 국내특허 건당 10점	
	산관학연구비 수혜	100 만원당 1점	
	교원창업	교원창업 건당 10점	
	학교기업	학교기업운영 건당 10점	
	신기술·제품 인증	건당 10점	

개 정 안

제3장 산학협력영역

제9조(산학협력영역의 평가) ① 산학협력영역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른 지산학관민연 협력 활동을 산학협력 연구,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국고지원사업 연계, 취업, 산업체 및 지역연계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연간 총 120점을 배정한다.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5>와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개정 2026. 00.00.)

<표 5> 산학협력영역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산학협력연구	산관학·국비 과제 보고서	관학연구보고서 건당 10점	20
		산학연구보고서 건당 10점	
		국비사업 계획보고서 작성 기여 건당 5점	
		국비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기여 건당 5점	
	지식재산·기술실적	국제특허 건당 10점 국내특허·신기술(제품)인증 건당 5점 기술이전 100만원당 1점	10
산학협력교	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대상 직무·외국어·문화·서비스 교육 등 운영프로그램 건당 5점 지역사회·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건당 5점	20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RISE 등 국고지원사업 참여 활동을 활동 형태에 따라 G1 강의·운영(건당 3점, 상한 12점), G2 개발(책임 5·참여 3점, 상한 15점), G3 협력(책임 5·참여 3점, 상한 15점), G4 사업운영 책임(단장·부단장 10점, 영역 책임

현 행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산학협력교육및창업	산학교육프로그램운영	운영프로그램 건당 5점	20
	현장실습지도	순회지도 산업체 방문건당 2점(상한점수 10점)	
	학생창업지도	창업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5점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건당 5점	
	캡스톤 디자인 지도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5점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 학기 당 2점	
	일학습병행지도	일학습병행 지도교수 학습기업별 건당 5점	
취업	학과취업 상승률	전년도 학과 취업률 대비 상승률	10
		전년대비상승률 / 전년도취업률 80%이상 / 5%이상 / 4%이상 / 3%이상 / 2%이상 / 1%이상	
		평가점수 / 10 / 10 / 8 / 6 / 4 / 2	
	취업률 집단	취업률 / 80%이상 / 75%이상 / 70%이상 / 65%이상 / 60%이상 / 55%이상 / 50%이상	30
		평가 / 30 / 27 / 25 / 22 / 20 / 15 / 10	

개 정 안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육및창업	현장실습지도	순회지도 산업체 방문건당 2점	14
	창업교육·지도	창업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5점 /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건당 5점 교원창업·학교기업 운영 건당 10점	10
	캡스톤·PBL 지도	캡스톤디자인·PBL 교과목 지도교수 학기당 3점 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3점	9
국고지원사업연계	G1 국고지원사업 강의·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개설·지원되는 교과목(과목·학기당) 및 비교과·비학위 프로그램(운영 8시간 이상, 건당)의 강의·운영 건당 3점 (공동 담당 시 담당 시간 비율로 안분)	12
	G2 국고지원사업 개발	사업비로 개발하여 주관부서 검수를 마친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트랙, 산학공동설계 교육과정 포함)·프로그램·교육콘텐츠·진단도구·교육모델 및 정규 편성 심의를 통과한 신규 혁신 교과목 개발(강의계획서 및 전용 교재·콘텐츠 검수 완료 건) 건당 책임교원 5점·참여교원 3점. 단, 동일 교과목의 단순 강의·운영 실적(G1)과는 중복 계상하지 아니함	15
	G3 국고지원사업 협력	산업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역사회·다른 대학 등 외부 주체와 함께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업 과제(지역현안 프로젝트, 자문·멘토링,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등) 건당 책임교원 5점·참여교원 3점	15
	G4	총장 승인 사업단 조직도·위촉장에 따른 운	20

부서장·학과장·성과관리 TF 5점, 보직 점수와 별도, 상한 20점)의 4유형으로 구분하여 정규 평가항목으로 신설(상한 합계 62점)하고 산학협력영역을 110→120점으로 조정. 실적은 주관부서 대장(프로그램·과제 단위, 참여 교원·역할)으로 확인하고 1실적 1항목으로 계상(위원회 검토의견 반영, 2026 성과평가보고서 활동 분석 기반)

- 취득 실적이 거의 없는 항목(연구비 수혜·특허·기술이전·창업·일학습병행·경영기술자문 등)은 삭제 대신 관련 항목으로 통합하여 취득 경

현 행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점수	
		개인	취업인원수 1인당 2점	10
산업체및지역연계	산학협력협약		산학협약 체결 및 관리 신규 업체 당 2점 산학협약 체결 및 관리 기존 업체 당 1점	20
	<신설> 지역연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체결 및 실적 건당 5점	
	경영·기술자문		자문활동 건당 2점	
계				110

개 정 안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국고지원사업 운영 책임	영 역할(6개월 이상): 사업단장·부단장 10점, 영역 책임교원(영역 주관 부서장·학과장)·성과관리 TF 위원 5점(6개월 미만 1/2, 보직 점수와 별도 인정)	
취업	학과 취업률(집단)	학과 졸업자 취업률(대학정보공시 기준, 학과 단위;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 제3항) 취업률: 85% 이상 / 80% 이상 / 75% 이상 / 70% 이상 / 65% 이상 / 60% 이상 / 55% 이상 / 50% 이상 / 50% 미만 평가점수: 33 / 30 / 27 / 24 / 21 / 17 / 13 / 8 / 0	33
취업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취업지도 학생 1인당 4점(소속학과 무관, 지도학생 기준)	20
취업	학생취업지도	취업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건당 3점	15
취업	지역정주 취업 가산	지도학생이 대학 소재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2점(취업 주관부서 확인)	10
산업체및지	산학협력협약	산학협약 체결 및 관리 신규 업체 당 3점 협약업체 실질운영(공동 프로그램·현장실습·채용 연계·기술지도 등 결과 확인) 건당 2점(상한 6점)	20
산업체및지	지역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 민	20

로를 유지하고, 부문 합산 상한(20점씩)을 항목별 상한으로 전환

- 취업: 이진 분포로 변별력이 없는 학과취업 상승률을 폐지하여 학과 취업률(33점, 9단계)에 통합하고, 지도학생 취업률의 표(2점)·조문(4점) 불일치를 4점(상한 20점)으로 정정, 학생취업지도(15점)·지역정주 취업 가산(1인당 2점, 상한 10점) 신설

- 지역연계: 협력 상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현 행	개 정 안	
② 산학협력분야 업적의 점수는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참여자(운영자, 방문자, 지도교수 등)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③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한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 또는 지도교수는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 실적 인정에 관련된 모든 계약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포함된 계약만 인정한다. ⑤ 산관학연구보고서는 정부, 공공기관, 공공재단 및 타 대학 등으로부터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유치하여 개별 제본된 최종보고서만 인정한다. 연구자의 소속이 장안대학교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교외수탁보고서는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에 의해 진행된 보고서만 인정한다. 다년 계약에 의한 과제 연구보고서	<table><tr><th>평가부분</th><th>평가항목</th><th>산출방법</th><th>상한점수</th></tr><tr><td>역연계</td><td>계</td><td>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와 협약체결 건당 3점 협약에 따른 실질 사업(지역특화 R&D,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빙랩,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 등)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건당 7점</td><td></td></tr><tr><td colspan="3">계</td><td>120</td></tr></table> ※ 국고지원사업 연계(G1~G4)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을 그 형태에 따라 G1(강의·운영), G2(개발), G3(협력), G4(사업 운영 책임)의 네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며, 하나의 실적은 한 항목에만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영역의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점수는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활동·프로그램 및 지도교수는 주관부서에 신고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만 인정한다. 3. 계약을 수반하는 실적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포함된 계약만 인정한다. 4. 하나의 실적은 하나의 항목에만 계상하며, 실적의 확인은 주관부서의 대장을 우선으로 한다. 5. 실적은 실질적으로 참여·기여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명의만 등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허위 또는 명의 대여로 확인된 실적은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하고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9조에 따른다.	공공기관·연구기관·지역 민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로 확장하고, 협약 체결(3점) 위주의 실적보다 지역특화 R&D·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리빙랩 등 실질적인 문제해결형 사업 수행(결과보고서, 7점)을 차등 인정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기여 활동을 업적에 반영(규정 제4조제2호와 연계) - 실적 인정 원칙: 실질 참여·기여 요건과 명의 대여 불인정(0점·규정 제19조)을 명시(산학협력단 의견 반영) - 참여기회 배정: 국고지원사업 연계 활동과

현 행	개 정 안	
는 최종 보고서만 인정한다. 1개월 미만의 단기간 단순용역 및 서류형식의 보고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기술이전은 연구수행의 결과로 발생된 기술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이나, 합작투자, 이수·합병의 방법을 통한 기술이전은 제외한다. 기술이전의 측정은 기술실시계약체결서 및 세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으로 한다. ⑦ 특허는 연구수행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실적을 말하며, 특허권자(또는 발명자·고안자)가 장안대학교이면서 해당 교원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업적으로 평가한다. 특허 신청시점이 아닌 특허등록이 완료된 취득시점에 업적으로 평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특허와 국외특허를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⑧ 산업체연구비 수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 본 대학교(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 대학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를 받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기간에 대학(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함)에 입금된 산업체 연구비 수혜액 100만원 당 1점으로 한다. ⑨ 교원창업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학교기업을 창업하거나 유지한 실적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개정 2022.1.1.) ⑩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운영한 실적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⑪ 신기술·제품인증은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신기술, 제품 등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승인, 인증을	③ 산학협력 연구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 정부·공공기관·타 대학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한 관학연구보고서(건당 10점),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출한 산학연구보고서(건당 10점), 국고지원사업 계획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여(각 건당 5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개별 제본 최종보고서만 인정하며, 다년 계약에 의한 과제 연구보고서는 최종 보고서만 인정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순용역·서류형식 보고서는 제외한다. 2. 지식재산·기술실적: 장안대학교가 특허권자이고 해당 교원이 발명자로 등록된 국제특허(건당 10점), 국내특허 및 정부·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인증(건당 5점), 대학에 입금된 기술이전 수입(100만원당 1점). 특허는 등록 완료 시점에 평가하고 동일 내용의 국내·국외 특허는 하나만 인정한다. ④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일학습병행 등)과 산업체 대상 교육, 지역사회·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취·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건당 5점 2. 현장실습지도: 현장견학 인솔 또는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위한 산업체 방문 건당 2점(주관부서의 배정 자료로 확인) 3. 창업교육·지도: 창업경진대회 입상 지도 및 취·창업동아리 지도 건당 5점, 교원창업 및 학교기업 운영 건당 10점 4. 캡스톤·PBL 지도: 정규 교과목으로 1학기 이상 팀 과제를 운영한 캡스톤디자인·PBL 교과목의 지도교수 학기당 3점, 관련 경진대회 입상 지도 건당 3점.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한다. 단 같은 과제로 두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더 높은 점수의 실적만 인정한다.	지도 배정 항목의 참여 기회를 공개 배정하고 특정 학과·교원 편중을 방지하며,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교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함(산학협력단·교원 의견 및 학과 특성에 따른 기회 불균형 완화라는 개정 취지 반영). 배정 비율 등은 별도로 정함 - 조문 구조: 22개 항 나열식을 5개 부문 항 구조로 정비하여 표와 조문을 1:1로 대응(위원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받은 실적을 말하며,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기술, 제품 등에 한 승인서 또는 인증서로 확인한다. ⑫ 산학교육프로그램운영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주문식 교육과정 설치 운영) 등 산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채용을 약정하고 우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평가한다. ⑬ 현장실습지도는 현장견학을 위해 인솔교수로 참여한 실적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지도교수로 참여한 실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⑭ 학생창업지도는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활동, 창업경진대회 참가 지도 등 학생창업지도 실적에 대해 평가하며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⑮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참가지도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캡스톤 디자인은 정규교과목으로 팀 과제를 1학기 이상 운영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한다. 단,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입상지도 실적과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입상지도 실적만 인정한다. (개정 2024.12. 1.) ⑯ 일학습병행지도는 학생취업지도를 위해 운영한 직업지도프로그램 운영실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개정 2022.1.1.) ⑰ <삭제> ⑱ 학과 취업 상승률은 전년도 학과 취업률 대비 상승 부분의 노고를 인정하여 반영하며, 전년도 학과 취업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만점인 10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2.1.1.) ⑲ 취업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연도 최종 대학공시 자료와 해외취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사(창)업자, 프리랜서, 농림어업종사자는 학과에서	⑤ 국고지원사업 연계 부문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RISE 사업, 앵커사업 등을 말하며, 이하 “국고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활동을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실적은 사업 주관부서가 프로그램·과제 단위로 등록·관리하는 대장(참여 교원·역할·결과보고서)으로 확인하며, 하나의 실적은 각 호 중 하나에만 계상하고 다른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1. G1 강의·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개설·지원되는 교과목과 비교과·비학위 프로그램을 강의·운영한 경우 교과목은 과목·학기당, 프로그램은 운영시간 8시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건당 3점. 공동으로 담당한 경우 담당 시간 비율로 안분한다. 2. G2 개발: 국고지원사업비로 개발하여 주관부서의 검수를 마친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트랙 및 산학공동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한다)·프로그램·교육콘텐츠·진단도구·교육모델 등의 결과물과 정규 편성 심의를 통과한 신규 혁신 교과목의 개발(강의계획서와 전용 교재·콘텐츠의 검수를 마친 것에 한한다) 건당 책임교원 5점, 참여교원 3점. 다만, 같은 교과목의 단순 강의·운영 실적(제1호)과는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3. G3 협력: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사회, 다른 대학 등 외부 주체와 함께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업과제 건당 책임교원 5점, 참여교원 3점 4. G4 사업 운영 책임: 총장이 승인한 사업단 조직에 따라 6개월 이상 수행한 운영 역할에 대하여 사업단장 및 부단장 10점, 영역 책임교원(해당 영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 및 성과관리 TF 위원 5점. 6개월 미만은 2분의 1을 인정하며, 이 점수는 <표 7>의 보직 점수와 별도로 인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의 현황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개정 2024.12. 1.) 2.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 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 3.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최초 졸업생 발생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취업률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1.1.) 4. 개인별 취업률은 교수별로 취업지도 활동 및 노력의 결과로 취업이 되어 당해 연도 대학공시 취업률에 포함된 취업지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취업학생 1인당 4점을 배점하여 평가한다. ⑳ 산학협력협약 건수는 평가 대상기간 동안 산업체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현장실습, 공동연구, 공동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산학협력 교류 실적 관리를 해야 한다. 기존 업체와의 협약체결인 경우 건당 1점, 신규 업체와의 협약체결인 경우 건당 2점을 배점하고, 관련 부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⑳ 삭제 ㉑ 지역연계는 평가 대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 공동연구,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연계 교류 실적 관리를 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신설 2024.12. 1.) ㉒ 경영·기술자문은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 기술 또는 경영지도, 자문을 실시한 실적을 말한다. 기술·자문실적은 회사 방문일자, 지도 내용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책임교원은 프로그램·과제당 1명으로 하고 참여교원은 결과보고서에 역할이 명시된 교원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로 나누지 아니한다. ⑥ 취업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학과 취업률(집단):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과 취업률에 따라 <표 5>의 구간별 점수를 학과 교수 개인의 점수로 한다. 신설학과는 최초 졸업생 발생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점수를 반영하며, 해외취업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 창(사)업자·프리랜서·농림어업종사자는 학과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의 현황자료에 따라 반영한다. 2.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교수의 취업지도로 취업하여 당해 연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에 포함된 지도학생 1인당 4점(지도학생의 소속학과와 무관) 3. 학생취업지도: 취업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건당 3점 4. 지역정주 취업 가산: 지도학생이 대학 소재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2점(취업 주관부서 확인) ⑦ 산업체 및 지역연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학협력협약: 산업체와 신규로 체결한 협약 업체당 3점, 기존 또는 신규 협약업체와의 공동 프로그램·현장실습·채용 연계·기술지도 등 실질 운영 실적 건당 2점(상한 6점). 협약업체와의 교류 실적은 주관부서가 관리한다. 2. 지역연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 민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와의 협약 체결 건당 3점, 협약에 따른 실질 사업(지역특화 R&D,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빙랩,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 등) 수행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건당 7점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th></tr>
<tr><td></td><td>⑧ 주관부서는 제5항의 국고지원사업 연계 활동과 제8조 제7항의 지도 배정 등 참여 기회의 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매 참여자 모집 또는 배정 시 참여 기회를 공개 모집·배정하되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등)의 교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때에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td><td></td></tr>
<tr><td>

제4장 연구영역

제10조(연구영역의 평가) ① 연구영역은 논문 및 저서·창작 및 실기 등으로 평가하며 연간 총 110점을 배정한다. 그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6>과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표 6> 연구영역 및 창작활동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 1.)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단위	기준 점수
논문	국제적 전문 학술지	편당	18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편당	15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편당	120
	일반 학술지	편당	70
	석사학위논문	편당	100
	박사학위논문	편	200

</td><td>

제4장 연구영역

제10조(연구영역의 평가) ① 연구영역은 논문 및 저서·창작 및 실기 등으로 평가하며 연간 총 110점을 배정한다. 그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6>과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표 6> 연구영역 및 창작활동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단위	기준점수
논문	SCI(E)·SSCI·A&HCI·Scopus 등재 학술지	편당	20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편당	15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편당	120
	일반 학술지	편당	70
	석사학위논문	편당	100
	박사학위논문	편당	200
저서	학술저서	권	100
	전공관련 번역서	권	80
	편저서	권	50
	교과서	권	50

</td><td>- 국제학술지는 SCI(E)·SSCI·A&HCI·Scopus 등재지(200점)로 한정하여 질적 변별(의견수렴 반영), 약탈적 학술지 배제. 등재지 외 국제학술지는 사례가 적어 별도 항목을 두지 않음(위원회 의견)</td></tr>
</table>

현 행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단위	기준 점수
			당	
저서	학술저서		권	100
	전공관련 번역서		권	80
	편저서		권	50
	교과서		권	50
	저서 개정판		권	50
멀티미디어 교재개발	멀티미디어 교재/문제집 CD로 작성된 저서		권	80
학술발표	국제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50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50 2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0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20 10
문학	창작단행본, 작품집(신작30%이상)		권	100
	시, 동화, 수필, 평론		편	20
	소설, 장편동화, 시나리오, 희곡(원고지200매이상)			80
미술·디자인·음악·영상물제작	개인전	국제	회당	150
		국내	회당	100
	단체전	국제	회	60

개 정 안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단위	기준점수
	저서 개정판		권	50
멀티미디어 교재개발	멀티미디어 교재/문제집 CD로 작성된 저서		권	80
학술발표	국제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50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50 2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0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20 10
문학	창작단행본, 작품집(신작30%이상)		권	100
	시, 동화, 수필, 평론		편	20
	소설, 장편동화, 시나리오, 희곡(원고지200매이상)			80
미술·디자인·음악·영상물제작	개인전	국제	회당	150
		국내	회당	100
	단체전	국제	회당	60
		국내	회당	40
	공모전 (대한민국 미술대전,대한민국 산업디자인 대전,대한민국패션대전 등)	대상	회당	150
		특선	회당	100
		입선	회당	50
	<신설>음반 출간	개인 음반 출간	건당	50
		2인 이상 공동 음반	건당	25

현 행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단위	기준 점수
			당	
		국내	회 당	40
	공모전 (대한민국 미술대전,대한민국 산업디자인 대전,대한민국 패션대전 등)	대상	회 당	150
		특선	회 당	100
		입선	회 당	50
	<신설>음반 출간	개인 음반 출간	건 당	50
		2인 이상 공동 음반 출간	건 당	25
	<신설>작곡	개인 작곡 발표회	건 당	100
		2인 이상 작곡 발표회	건 당	50
		합창곡 발표, 독주곡 발표, 영상음악·레코딩, 컴퓨터음악, 멀티미디어음악	건 당	50
	<신설>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음악제의 연출, 기획, 감독 또는 1/2이상 작곡, 편곡, 반주, 지휘	국제	회 당	100
		국내	회 당	50
체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의 개인 연구 발	국제	회 당	150

개 정 안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단위	기준점수
		출간		
	<신설>작곡	개인 작곡 발표회	건당	100
		2인 이상 작곡 발표회	건당	50
		합창곡 발표, 독주곡 발표, 영상음악·레코딩, 컴퓨터음악, 멀티미디어음악	건당	50
	<신설>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음악제의 연출, 기획, 감독 또는 1/2이상 작곡, 편곡, 반주, 지휘	국제	회당	100
		국내	회당	50
체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의 개인 연구 발표회	국제	회당	150
		국내	회당	100
	각종 경기의 심판	국제공인 경기심판	회당	100
		전국규모 국내 공인 경기심판	회당	50
	국제공인 심판자격 획득		건당	50

- 연구영역 상한(110점) 초과 실적을 특별가산점으로 인정하는 근거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th></tr>
<tr>
<td>
<table>
<tr><th>항목</th><th colspan="2">세 부 항 목</th><th>평가 단위</th><th>기준 점수</th></tr>
<tr><td rowspan="4"></td><td colspan="2">표회</td><td>회당</td><td>100</td></tr>
<tr><td rowspan="2">각종 경기의 심판</td><td>국제공인경기심판</td><td>회당</td><td>100</td></tr>
<tr><td>전국규모 국내 공인경기심판</td><td>회당</td><td>50</td></tr>
<tr><td colspan="2">국제공인 심판자격 획득</td><td>건당</td><td>50</td></tr>
</table>
<신 설>

제11조(연구영역 평가기준 및 방법) ~ 제18조(체육분야) (생략)
</td>
<td>※ 국제학술지는 SCI(E)·SSCI·A&HCI·Scopus 등재지에 한하며,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유형(약탈적 학술지 등)은 제외한다.
② 연구영역의 취득 실적점수가 상한점수(110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제23조 제5항에 따라 특별가산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6. 00.00.>

제11조(연구영역 평가기준 및 방법) ~ 제18조(체육분야) (현행과 같음)</td>
<td>신설(위원 의견수렴 반영)</td>
</tr>
<tr>
<td><h3>제5장 봉사 영역</h3>제19조(봉사영역의 평가부문) ① ~ ④ (생략)

<표 7> 봉사영역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td>
<td><h3>제5장 봉사 영역</h3>제19조(봉사영역의 평가부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표 7> 봉사영역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td>
<td></td>
</tr>
</table>

현 행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교내봉사	처장	40	개월	
	본부장, 부처장, 원장, 부원장, 관장, 센터장 등	40	개월	
	학과장. 학부장	30	개월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10	건당	3
	대학발전 각종 프로젝트 참여	10	건당	10
	산학협력단(처) 사업제안서 참여	10	건당	10
	진로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 방문	30	방문처당	3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 유치 또는 참여	20	회	3
	학사학위 과정,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유치 실적	20	1인당	2
	학보 및 교지기고	10	1회당	3
	교육기부	10	1회당	2
	예비대학운영	10	1학기당	5

개 정 안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교내봉사	처장	50	개월	
	본부장, 부처장, 원장, 부원장, 관장, 센터장 등	40	개월	
	학과장. 학부장	30	개월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국고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포함)	10	건당	3
	대학발전 각종 프로젝트 참여 (국고지원사업 TF 참여 포함)	10	건당	10
	산학협력단(처) 사업제안서 참여	10	건당	10
	진로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 방문	30	방문처당	3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 유치 또는 운영 참여	20	회	6
	학사학위 과정,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유치 실적	20	1인당	2
	학보 및 교지기고	10	1회당	3
	교육기부	10	1회당	2
	예비대학운영	10	1학기당	5
	시간제 등록생 유치	10	1명당	2
	학점은행제교과운영	10	교과목당	10
	성인학습학과 개설 및 운영	10	1개 학과당	10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1개당	5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채택	10	1회당	5

- 대학발전 각종 프로젝트 참여: 국고지원사업 TF 참여를 인정범위에 명시(국고지원사업 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참여는 교내 위원회 항목으로)

-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 유치 또는 운영 참여: 회당 3→6점(입학활동 활성화, 의견수렴 반영)

현 행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시간제 등록생 유치	10	1명당	2
	학점은행제교과운영	10	교과목당	10
	성인학습학과 개설 및 운영	10	1개학과당	10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1개당	5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채택	10	1회당	5
	국제교류 및 해외대학 협정체결	10	건당	5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운영	20	반당	10
	자유학기제 참여	10	건당	2
	<제23조(특별가산점)으로 이동>			
교외봉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 임원	10	1개월당	1
	국내외 학술회의 좌장 및 패널, 사회자	10	회당	1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10	1일	2

개 정 안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국제교류 및 해외대학 협정체결	10	건당	5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운영(수업 담당 교원·운영 학과장)	20	반당	10
	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 운영 – 토요일 대면수업 포함(수업 담당 교원·운영 학과장)	20	반당	10
	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 운영 – 온라인(수업 담당 교원)		반당	5
	자유학기제 참여	10	건당	2
	<제23조(특별가산점)으로 이동>			
교외봉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 임원	10	1개월당	1
	국내외 학술회의 좌장 및 패널, 사회자	10	회당	1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10	1일 8시간기준	2
	언론매체 기고, 방송매체 출연 등	10	회당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	10	1개월당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 학술단체의 연구, 심사, 평가단, 출제, 채점, 심사위원	10	회당	2
학사참	대학행사(20점) 전체교수회의, 교수연수, 워크샵, 특강 등	20		20-(불참횟수×2)

현 행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8시간기준	
	언론매체 기고, 방송매체 출연 등		10	회당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		10	1개월당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 학술단체의 연구, 심사, 평가단, 출제, 채점, 심사위원		10	회당	2
학사참여도	대학행사(20점)	전체교수회의, 교수연수, 워크샵, 특강 등	20		20-(불참횟수×2)
	학과행사(10점)	졸업식, 입학식, 과제전, 졸업전, MT, 축제, 체육대회, 신입생O.T, 학과회의 등	10		10-(불참횟수×2)

개 정 안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여도	학과행사(10점)	졸업식, 입학식, 과제전, 졸업전, MT, 축제, 체육대회, 신입생O.T, 학과회의 등	10		10-(불참횟수×2)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내봉사) ① (생략) ②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는 위원회 위촉현황을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2.1.1.) ③ ~ ⑤ (생략) ⑥ 입학홍보활동은 학과 및 대학의 홍보로 신입생 유치와 관련된 진로 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을 방문한 활동과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를 유치 또는 참여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4.12. 1.) ⑦ ~ ⑭ (생략) ⑮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운영 실적은 외국인 별도반을 운영하는 학과의 모든 교수에게 해당하며 반당 15명 이상의 학생이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024.12. 1.> ⑯ · ⑰ (생략) **제21조(교외봉사)** (생략) **제22조(학사참여도)** (생략) **제23조(특별가산점)** ① 특별가산점은 훈·포장, 교내표창, 정부 및	**제20조(교내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는 위원회 위촉현황을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하며, 국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운영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위원 참여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 (개정 2026. 00.00.)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입학홍보활동은 학과 및 대학의 홍보로 신입생 유치와 관련된 진로 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을 방문한 활동과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를 유치 또는 운영에 참여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⑦ ~ ⑭ (현행과 같음) ⑮ 별도과정 운영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교원 중 해당 과정의 수업을 담당한 교원에게 인정하고, 운영 학과의 학과장에게는 수업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정당 10점을 인정하되 수업 담당 점수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각 호의 상한점수는 20점으로 한다. <신설 2024.12. 1.>, (개정 2026. 00.00.) 1.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반당 15명 이상): 반당 10점 2. 성인학습자 별도반 및 산업체 위탁과정(반당 10명 이상): 토요일 대면수업을 포함하여 운영한 경우 반당 10점, 온라인으로 운영한 경우 반당 5점 ⑯ · ⑰ (현행과 같음) **제21조(교외봉사)** (현행과 같음) **제22조(학사참여도)** (현행과 같음)	- 교내 각종 위원회 참여(제20조②): 국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운영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위원 참여를 포함하도록 명시 - 별도과정 운영: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에 한정된 인정을 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으로 확대(대면 반당 10점·온라인 반당 5점, 상한 20점)하고, 수업 담당 교원과 운영 학과장(수업 여부 불문, 중복 불인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th></tr>
<tr>
<td>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등의 표창·상장 등 수상실적과 발전기금 기부·유치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3. 5. 30.)

② ~ ④ (생략)

<표 8> 특별가산점 (개정 2023. 5. 30.), (개정 2024.12. 1.)
<table>
<tr><th>항목</th><th>평가항목</th><th>평가단위</th><th>건당점수</th></tr>
<tr><td rowspan="6">특별가산점</td><td>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td><td>건당</td><td>10</td></tr>
<tr><td>교내 표창</td><td>건당</td><td>5</td></tr>
<tr><td>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및 대학총장 수상</td><td>건당</td><td>5</td></tr>
<tr><td>학술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수상</td><td>건당</td><td>3</td></tr>
<tr><td>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td><td>건당</td><td>3</td></tr>
<tr><td>발전기금 기부·유치</td><td>연봉액의 1%당</td><td>2(상한점수 20점)</td></tr>
</table>

<신 설>

제24조(특별감점) ① ~ ④ (생략)
<신 설></td>
<td>제23조(특별가산점) ① 특별가산점은 훈·포장, 교내표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등의 표창·상장 등 수상실적, 발전기금 기부·유치 실적 및 연구영역 상한점수 초과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3. 5. 30.), (개정 2026. 00.00.)
② ~ ④ (현행과 같음)

<표 8> 특별가산점 (개정 2023. 5. 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table>
<tr><th>항목</th><th>평가항목</th><th>평가단위</th><th>건당점수</th></tr>
<tr><td rowspan="8">특별가산점</td><td>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td><td>건당</td><td>10</td></tr>
<tr><td>교내 표창</td><td>건당</td><td>5</td></tr>
<tr><td>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및 대학총장 수상</td><td>건당</td><td>5</td></tr>
<tr><td>학술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수상</td><td>건당</td><td>3</td></tr>
<tr><td>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td><td>건당</td><td>3</td></tr>
<tr><td>발전기금 기부·유치</td><td>연봉액의 1%당</td><td>2(상한점수 20점)</td></tr>
<tr><td>연구업적 상한점수(110점) 초과분</td><td>초과분 매 40점당</td><td>5 (상한점수 20점)</td></tr>
</table>
⑤ 연구영역의 취득 실적점수가 상한점수(110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매 40점당 5점을 가산하며, 가산점의 상한은 20점으로 한다. <신설 2026. 00.00.>

제24조(특별감점) ① ~ ④ (현행과 같음)</td>
<td>정)에게 인정(위원회 의견 반영)

- 특별가산점: 제23조①에 연구영역 상한점수 초과 실적을 추가(규정 제4조제5호와 일치)하고 초과분 매 40점당 5점(상한 20점) 가산 신설.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등 그 밖의 항목은 현행 유지</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th></tr>
<tr>
<td><신 설>

<표 9> 특별감점 (개정 2024.12. 1.)
<table><tr><th>항목</th><th>평가항목</th><th>평가단위</th><th>건당점수</th></tr><tr><td rowspan="9">특별감점</td><td>정직(중징계)</td><td>1회당</td><td>-20</td></tr><tr><td>감봉(경징계)</td><td>1회당</td><td>-15</td></tr><tr><td>견책(경징계)</td><td>1회당</td><td>-10</td></tr><tr><td>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td><td>1회당</td><td>-8</td></tr><tr><td>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td><td>1회당</td><td>-5</td></tr><tr><td>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td><td>1회당</td><td>-5</td></tr><tr><td>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td><td>1회당</td><td>-5</td></tr><tr><td>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강 등 발생 시</td><td>1회당</td><td>-5</td></tr><tr><td>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td><td>1회당</td><td>-3</td></tr></table></td>
<td>⑤ 학기 중(학사일정상 개강일부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사적 국외여행은 교원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업 및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학기당 누계 15일(주말·공휴일을 포함한다)·2회 이내로 한다. 결강이 발생하여 보강이 필요한 여행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00. 00.>
⑥ 국제학술대회 참가, 공동연구, 산학협력 등 공무 목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국외여행은 공무 국외여행으로 분류하여 제5항의 누계 일수·횟수와 <표 9>의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00.00.>

<표 9> 특별감점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00.)
<table><tr><th>항목</th><th>평가항목</th><th>평가단위</th><th>건당점수</th></tr><tr><td rowspan="9">특별감점</td><td>정직(중징계)</td><td>1회당</td><td>-20</td></tr><tr><td>감봉(경징계)</td><td>1회당</td><td>-15</td></tr><tr><td>견책(경징계)</td><td>1회당</td><td>-10</td></tr><tr><td>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td><td>1회당</td><td>-8</td></tr><tr><td>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 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td><td>1회당</td><td>-5</td></tr><tr><td>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td><td>1회당</td><td>-5</td></tr><tr><td>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국외여행 허가 기간 초과·허가 조건 위반(결강 발생)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td><td>1회당</td><td>-5</td></tr><tr><td>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td><td>1회당</td><td>-5</td></tr></table></td>
<td>- 특별감점: 「학사일정 기간 중 해외여행 1회당 -3점」 행을 삭제하고, 총장 허가제 운영 실태에 맞게 감점 사유를 「허가받은 여행」에서 「무허가 출국·허가 기간 초과·허가 조건 위반(결강 발생)」으로 전환하여 기존 복무 규정 위반 항목(-5점)에 통합.</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th></tr>
<tr>
<td>
<table>
<tr><th>항목</th><th>평가항목</th><th>평가단위</th><th>건당점수</th></tr>
<tr><td rowspan="2"></td><td>학사일정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 시</td><td>1회당</td><td>-3</td></tr>
<tr><td>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td><td>1회당</td><td>-3</td></tr>
</table>
</td>
<td>
<table>
<tr><th>항목</th><th>평가항목</th><th>평가단위</th><th>건당점수</th></tr>
<tr><td rowspan="4"></td><td>강 등 발생 시</td><td></td><td></td></tr>
<tr><td>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td><td>1회당</td><td>-3</td></tr>
<tr><td>학사일정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 시 <삭제></td><td>1회당</td><td>-3</td></tr>
<tr><td>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td><td>1회당</td><td>-3</td></tr>
</table>
</td>
<td>학기 중 사적 국외여행의 허가 원칙(수업·직무에 지장 없는 범위, 학기당 누계 15일·2회 이내, 보강이 필요한 여행은 불허)과 공무 국외여행(국제학술대회·공동연구·산학협력) 예외를 제24조⑤·⑥에 신설(교무처장 검토의견, 타대학 표준형 모델 참고)</td>
</tr>
<tr>
<td>

제6장 평가결과 및 활용

제25조(교원승진적용) ~ 제27조(우수교원포상) (생략)

제6장 보칙

제28조(기타) (생략)

</td>
<td>

제6장 평가결과 및 활용

제25조(교원승진적용) ~ 제27조(우수교원포상) (현행과 같음)

제7장 보칙

제28조(기타) (현행과 같음)

</td>
<td>- 장 번호 중복(제6장 평가결과 및 활용 / 제6장 보칙) 정비</td>
</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시행규칙의 개정 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2026년 10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부터 적용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영역 구분) 교수업적평가 영역은 교육영역, 산학협력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제3조(평가영역별 점수배분)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평가영역별 점수배분은 <표 1>과 같으며 교육영역 170점, 산학협력영역 120점, 연구영역 110점, 봉사영역 100점으로 하여 4개 영역의 점수합계는 500점으로 하며, 각 영역별 점수는 해당 영역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가산점은 4개 영역의 점수합계와 별도로 가산하고, 특별감점은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개정 2020.12.22.),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표 1> 교수업적평가 종합표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교육	강의	강의시수	-5~10	개별	교무처
		주당강의일수	-5	개별	교무처
		강의계획서 및 성적	-5	개별	교무처
		휴보강	-5	개별	교무처
		강의평가	40	개별	교무처
		성적정정	-5	개별	교무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6	개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운영규정·저작권 위반, 운영보고서 미제출 감점	-8	개별	원격교육지원센터
		교수 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지도	10	개별	관련 부서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25	개별	학생상담센터
		교과외 학생지도	10	개별	학생지원처
		학생성공 지도	10	개별	관련 부서
		재학생 등록유지율	35	집단	교무처
		신입생 충원율	35	집단	입학처
	계		170		
산학협력	산학협력 연구	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관학·산학연구보고서, 국비사업 계획·성과보고서)	20	개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기술실적(특허·신기술인증·기술이전 통합)	10	개별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20	개별	산학협력처
		현장실습지도	14	개별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지도(교원창업·경진대회·동아리·학교기업 통합)	1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캡스톤·PBL 지도	9	개별	교무처·산학협력처
	국고지원사업 연계	G1 국고지원사업 강의·운영	12	개별	산학협력단·교무처
		G2 국고지원사업 개발	15	개별	산학협력단

영역	부 문	항 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G3 국고지원사업 협력	15	개별	산학협력단
		G4 국고지원사업 운영 책임	20	개별	산학협력단
	취업	학과 취업률(집단)	33	집단	취·창업지원센터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2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취업지도(행사·프로그램)	15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지역정주 취업 가산	10	개별	취·창업지원센터
	산업체 및 지역연계	산학협력협약(신규 체결·협약업체 실질운영)	20	개별	산학협력처
		지역연계(지산학관민연 협약 3점·실질사업 7점)	20	개별	산학협력처
	계		120		
연구	연구 및 창작활동	논 문	110	개별	교무처
		저 서		개별	
		학술발표		개별	
		문학·예체능		개별	
	계		110		
봉사 및 기타	교내봉사		50	개별	관련부서
	교외봉사		20	개별	교무처
	학사참여도	대학행사	20	개별	교무처
		학과행사	10	개별	학과장
	계		100		
합 계			500		

※ 각 영역의 항목별 상한점수 합계는 영역 상한을 초과할 수 있으며, 영역별 취득점수는 영역 상한을 한도로 한다.

	항 목	건당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특별가산점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	10	개별	교무처
	교내 표창	5	개별	
	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로부터의 수상	5	개별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3	개별	
	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	3	개별	
	발전기금 기부·유치	연봉액의 1%당 2점 (상한점수 20점)	개별	기획처
	연구업적 상한점수(110점) 초과분	초과분 매 40점당 5점 (상한점수 20점)	개별	교무처

	항 목	건당점수	평가단위	평가부서
특별 감점	정직(중징계)	-20	개별	교무처
	감봉(경징계)	-15	개별	
	견책(경징계)	-10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8	개별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	-5	개별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	-5	개별	
	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국외여행 허가 기간 초과·허가 조건 위반(결강 발생)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5	개별	
	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강 등 발생 시	-5	개별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	-3	개별	
	학사일정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 시<삭제>	-3<삭제>	개별<삭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개별	

제4조(평가항목의 구분 등) ① 각 평가영역별로 부문-항목-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 00. 00.)
② 평가영역별, 항목별 또는 세부항목별로 각각 상한점수를 둔다.
③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등)의 교원에 대한 재학생 등록유지율, 신입생 충원율 및 학과 취업률 점수는 항목별로 해당 평가주기 학과 점수 평균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6. 00. 00.>

제2장 교육영역

제5조(교육영역의 평가부문) 교육영역은 강의부문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학생지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6. 00. 00.)

제6조(강의부문) ① 강의부문은 강의시수, 주당 강의일수, 강의계획서 및 성적, 휴·보강, 강의평가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2>와 같다. (개정 2022.1.1.)

<표 2> 강의부문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강의	강의시수	책임시수 1학점 초과 시 × 2	10	강의평가는 년간 4회를 실시하여 결과를 합산한다.
		책임시수 1학점 미달 시 × -2	-5	
	주당 강의일수	의무강의편성 일수에 미달일수 × -2	-5	
	강의계획서 및 성적	강의계획서 및 성적평가 기간 내 미입력 과목수 × -2	-5	
	휴보강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휴보강 및 미보강 횟수 × -2	-5	
	강의평가	(4회 취득점수 합산)/10	40	
	성적정정	성적정정기간 이후 성적정정 건수 × -2	-5	

② 주당 강의시수와 강의편성일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기별 주당 강의시수의 평점은 강의시간표 편성규정 제1조의 <표 1> 책임시수 및 강의편성 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무처에 제출된 시간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2. 1.)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강의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이후 취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3. '교과외 학습' 과 관련된 시간은 강의시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4. 행정보직 이동으로 인하여 해당교수의 책임시수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에 한하여 종전의 책임시수를 적용한다.
5. 학과 사정상 부득이 초과허용시수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주당 강의일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의 책임시수 및 강의편성 일수에 규정된 해당교수의 주당 책임강의일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

가하며 교무처에 제출된 시간표를 기준한다.
2. 보직교수는 강의일수와 관계없이 평점상한을 부여한다.
④ 강의계획서 및 성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담당 교과목당 1건의 강의계획서를 대학이 지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학교 전산시스템에 게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12. 1.)
2. <삭제 2024.12. 1.>
3. 성적입력에 대한 평가는 담당 교과목당 1건의 성적 산출 결과를 대학이 지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학교 전산시스템에 게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12. 1.)
⑤ 휴·보강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휴강 후 보충강의를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공무상 불가피한 휴강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휴·보강계획서는 해당강의 개시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병 등에 의한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사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3. 휴강은 본인 상병, 본인 및 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총장이 승인한 대학 행사, 총장이 명한 공식적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출장 등의 경우에 한해 공무상 불가피한 휴강으로 인정하며, 휴강은 보충강의를 해야 한다.
⑥ 강의평가에 대한 점수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기별 점수는 교수 개인별 강의평가 점수의 평균값[(해당학기 해당교수가 담당한 강좌 전체에 대한 강의평가 점수 총점) ÷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한 다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강의평가는 개설된 전과목(교양 및 전공)의 강의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가. 강좌별 수강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강의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모든 강좌에서 평가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한 점수의 60%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4.12. 1.)
나. <삭제 2024.12. 1.>
다. 현장실습교과목, 개별수강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⑦ 성적정정기간 이후에 성적 정정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은 대학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 운영, 교수역량 향상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참여·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3>과 같다. (개정 2026. 00. 00.)

<표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부문 (개정 2026. 00. 00.)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비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교과목 수 × 2점	6	
	원격수업 감점	원격수업 운영규정·저작권 관련 규정 위반 건당 -3점 운영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건당 -2점	-8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 및 교내 교육프로그램 지도	교내프로그램 참여시간당 × 1점,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은 참여건당 2점, 교내 교육프로그램 강의·지도 건당 3점	10	

② 해당 부문의 교과목 운영 여부는 시간표와 해당 부서의 현황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동일 교과목의 경우 1개만 인정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은 원격수업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러닝, 플립러닝을 의미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 등록된 교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2점을 인정한다. (개정 2026. 00. 00.)
④ 교수역량 향상프로그램 참여는 교내 프로그램(교내 교육연수 포함)에 한하며,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시간 1시간당 1점을 인정하고, 교수학습연구대회 등 공모전 형식의 프로그램인 경우 참여 건당 2점을 인정한다. 교내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지도는 건당 3점을 인정한다. (개정 2026. 00. 00.)
⑤ 원격수업 운영규정 또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당 3점, 원격수업 운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당 2점을 감점하며, 감점 한도는 8점으로 한다. <신설 2026. 00. 00.>

제8조(학생지도부문) ① 학생지도 부문은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교과외 학생지도, 학생성공 지도, 재학생 등록유지율, 신입생 충원율로 평가하며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4>와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6. 00. 00.)

<표 4> 학생지도부문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평가부문	평가항목	산출근거						상한점수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지도배정인원 면담건수						25
		면담건수	60건 이상	45건 이상	30건 이상	15건 이상	5건 이상	
		평가점수	25	20	15	10	5	
	교과외 학생지도	교내 동아리지도(일반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 5점/1개						10
		학생외부활동지도, 교외 전국규모 각종대회, 발표회, 전시회, 공모전들을 위한 특별지도 : 2점/건당						
	학생성공지도	학사경고·중도탈락 위험학생 멘토링, J-CAP 위험군 관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지도,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담당 학생 지도 : 1점/건당(주관부서 배정 실적)						10
	재학생 등록유지율	정원내(외) 재학생수 ÷ 해당 학년도와 직전 학년도의 정원내(외) 입학생수 합계(3년제 학과는 직전 2개 학년도 포함) × 100, 정원외 학생은 제한 없이 포함 (대학공시제, 교무처 현황 자료 기준;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						35
		등록유지율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80% 미만	
		평가점수	35	30	25	20	10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입학자수 + 정원외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 ÷ 정원내 모집인원 × 100(학과 단위, 입학처 현황 자료 기준;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						35
		충원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70% 미만
		평가점수	35	30	25	20	15	10

②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한다.
2. J-CAP 시스템에 입력된 학생지도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3. 오프라인 지도와 온라인 지도(SNS, 원격강의 시스템, e-mail,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자료 모두를 포함한다.
4.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에서 지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지도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실적에서 제외한다.
5. 졸업생에 대한 학생지도 및 진로·취업지도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2.1.1.)

③ 교과외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아리, 외부기관·단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각종대회, 발표회, 전시회, 공모전들을 위한 특별지도로 평가한다.
2. 각 학과별로 학과장을 경유한 활동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을 학생지원처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전공동아리는 교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6. 00. 00.)
3.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2.1.1.)

④ 재학생 등록유지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6. 00. 00.)

1.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정원내·외 재학생수를 해당 학년도와 그 직전 학년도의 정원내·외 입학생수 합계(3년제 학과는 직전 2개 학년도를 포함한다)로 나눈 비율(%)로 하며, 정원외 학생은 제한 없이 포함한다.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 기준으로 교무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개정 2026. 00. 00.)
2.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 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
3. 신설학과 및 학년제 개편학과의 경우에는 편제 완성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재학생 등록유지율 점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1.1.), (개정 2026. 00. 00.)

⑤ <삭제 2026. 00. 00.>

⑥ 신입생 충원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1.1.)

1.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내 입학자수에 정원외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의 20% 이내로 한다)를 더한 인원을 정원

내 모집인원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최종 대학공시제 자료를 기준으로 입학처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개정 2026. 00. 00.)

2. 학과별로 평가하여 학과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로 한다.(개정 2026. 00. 00.)

⑦ 학생성공 지도는 학사경고자·중도탈락 위험학생 멘토링, J-CAP 위험군 관리,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지도, 유학생 담임·멘토 지도,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A) 담당 학생 지도(담임·멘토·AA 지도는 학기별 학생당 2회 이상 상담한 경우 학생당 1건) 등 주관부서가 배정한 지도 실적을 건당 1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같은 상담 실적은 제2항의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실적과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00. 00.>

제3장 산학협력영역

제9조(산학협력영역의 평가) ① 산학협력영역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산학관민연 협력 활동을 산학협력 연구,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국고지원사업 연계, 취업, 산업체 및 지역연계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연간 총 120점을 배정한다.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5>와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2.2.17.), (개정 2026. 00. 00.)

<표 5> 산학협력영역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table>
<tr><th>평가부분</th><th>평가항목</th><th colspan="10">산출방법</th><th>상한점수</th></tr>
<tr><td rowspan="5">산학협력 연구</td><td rowspan="4">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td><td colspan="10">관학연구보고서 건당 10점</td><td rowspan="4">20</td></tr>
<tr><td colspan="10">산학연구보고서 건당 10점</td></tr>
<tr><td colspan="10">국비사업 계획보고서 작성 기여 건당 5점</td></tr>
<tr><td colspan="10">국비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기여 건당 5점</td></tr>
<tr><td>지식재산·기술실적</td><td colspan="10">국제특허 건당 10점
국내특허·신기술(제품)인증 건당 5점
기술이전 100만원당 1점</td><td>10</td></tr>
<tr><td rowspan="4">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td><td>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td><td colspan="10">산업체 대상 직무·외국어·문화·서비스 교육 등 운영프로그램 건당 5점
지역사회·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건당 5점</td><td>20</td></tr>
<tr><td>현장실습지도</td><td colspan="10">순회지도 산업체 방문건당 2점</td><td>14</td></tr>
<tr><td>창업교육·지도</td><td colspan="10">창업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5점 / 취·창업동아리 지도교수 활동 건당 5점
교원창업·학교기업 운영 건당 10점</td><td>10</td></tr>
<tr><td>캡스톤·PBL 지도</td><td colspan="10">캡스톤디자인·PBL 교과목 지도교수 학기당 3점
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3점</td><td>9</td></tr>
<tr><td rowspan="4">국고지원사업 연계</td><td>G1 국고지원사업 강의·운영</td><td colspan="10">국고지원사업으로 개설·지원되는 교과목(과목·학기당) 및 비교과·비학위 프로그램(운영 8시간 이상, 건당)의 강의·운영 건당 3점(공동 담당 시 담당 시간 비율로 안분)</td><td>12</td></tr>
<tr><td>G2 국고지원사업 개발</td><td colspan="10">사업비로 개발하여 주관부서 검수를 마친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트랙, 산학공동설계 교육과정 포함)·프로그램·교육콘텐츠·진단도구·교육모델 및 정규 편성 심의를 통과한 신규 혁신 교과목 개발(강의계획서 및 전용 교재·콘텐츠 검수 완료 건) 건당 책임교원 5점·참여교원 3점. 단, 동일 교과목의 단순 강의·운영 실적(G1)과는 중복 계상하지 아니함</td><td>15</td></tr>
<tr><td>G3 국고지원사업 협력</td><td colspan="10">산업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역사회·다른 대학 등 외부 주체와 함께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업 과제(지역현안 프로젝트, 자문·멘토링, 고교·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등) 건당 책임교원 5점·참여교원 3점</td><td>15</td></tr>
<tr><td>G4 국고지원사업 운영 책임</td><td colspan="10">총장 승인 사업단 조직도·위촉장에 따른 운영 역할(6개월 이상): 사업단장·부단장 10점, 영역 책임교원(영역 주관 부서장·학과장)·성과관리 TF 위원 5점(6개월 미만 1/2, 보직 점수와 별도 인정)</td><td>20</td></tr>
<tr><td rowspan="3">취업</td><td rowspan="3">학과 취업률(집단)</td><td colspan="10">학과 졸업자 취업률(대학정보공시 기준, 학과 단위;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의 교원은 제4조제3항)</td><td rowspan="3">33</td></tr>
<tr><td>취업률</td><td>85% 이상</td><td>80% 이상</td><td>75% 이상</td><td>70% 이상</td><td>65% 이상</td><td>60% 이상</td><td>55% 이상</td><td>50% 이상</td><td>50% 미만</td></tr>
<tr><td>평가점수</td><td>33</td><td>30</td><td>27</td><td>24</td><td>21</td><td>17</td><td>13</td><td>8</td><td>0</td></tr>
</table>

평가부분	평가항목	산출방법	상한점수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취업지도 학생 1인당 4점(소속학과 무관, 지도학생 기준)	20
	학생취업지도	취업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건당 3점	15
	지역정주 취업 가산	지도학생이 대학 소재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2점(취업 주관부서 확인)	10
산업체 및 지역연계	산학협력협약	산학협약 체결 및 관리 신규 업체 당 3점 협약업체 실질운영(공동 프로그램·현장실습·채용 연계·기술지도 등 결과 확인) 건당 2점(상한 6점)	20
	지역연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 민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와 협약체결 건당 3점 협약에 따른 실질 사업(지역특화 R&D,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빙랩,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 등)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건당 7점	20
계			120

※ 국고지원사업 연계(G1~G4)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을 그 형태에 따라 G1(강의·운영), G2(개발), G3(협력), G4(사업 운영 책임)의 네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며, 하나의 실적은 한 항목에만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영역의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점수는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활동·프로그램 및 지도교수는 주관부서에 신고되고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만 인정한다.
3. 계약을 수반하는 실적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포함된 계약만 인정한다.
4. 하나의 실적은 하나의 항목에만 계상하며, 실적의 확인은 주관부서의 대장을 우선으로 한다.
5. 실적은 실질적으로 참여·기여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명의만 등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허위 또는 명의 대여로 확인된 실적은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하고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9조에 따른다.

③ 산학협력 연구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관학·국비과제 보고서: 정부·공공기관·타 대학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한 관학연구보고서(건당 10점),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제출한 산학연구보고서(건당 10점), 국고지원사업 계획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여(각 건당 5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에 따라 수행된 개별 제본 최종보고서만 인정하며, 다년계약에 의한 과제 연구보고서는 최종 보고서만 인정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순용역·서류형식 보고서는 제외한다.
2. 지식재산·기술실적: 장안대학교가 특허권자이고 해당 교원이 발명자로 등록된 국제특허(건당 10점), 국내특허 및 정부·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인증(건당 5점), 대학에 입금된 기술이전 수입(100만원당 1점). 특허는 등록 완료 시점에 평가하고 동일 내용의 국내·국외 특허는 하나만 인정한다.

④ 산학협력 교육 및 창업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학교육·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와의 협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일학습병행 등)과 산업체 대상 교육, 지역사회·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취·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건당 5점
2. 현장실습지도: 현장견학 인솔 또는 현장실습 순회지도를 위한 산업체 방문 건당 2점(주관부서의 배정 자료로 확인)
3. 창업교육·지도: 창업경진대회 입상 지도 및 취·창업동아리 지도 건당 5점, 교원창업 및 학교기업 운영 건당 10점
4. 캡스톤·PBL 지도: 정규 교과목으로 1학기 이상 팀 과제를 운영한 캡스톤디자인·PBL 교과목의 지도교수 학기당 3점, 관련 경진대회 입상 지도 건당 3점.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한다. 단 같은 과제로 두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더 높은 점수의 실적만 인정한다.

⑤ 국고지원사업 연계 부문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RISE사업, 앵커사업 등을 말하며, 이하 "국고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활동을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실적은 사업 주관부서가 프로그램·과제 단위로 등록·관리하는 대장(참여 교원·역할·결과보고서)으로 확인하며, 하나의 실적은 각 호 중 하나에만 계상하고 다른 평가항목과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1. G1 강의·운영: 국고지원사업으로 개설·지원되는 교과목과 비교과·비학위 프로그램을 강의·운영한 경우 교과목은 과목·학기당, 프로그램은 운영시간 8시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건당 3점. 공동으로 담당한 경우 담당 시간 비율로 안분한다.

2. G2 개발: 국고지원사업비로 개발하여 주관부서의 검수를 마친 교육과정(마이크로디그리·트랙 및 산학공동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한다)·프로그램·교육콘텐츠·진단도구·교육모델 등의 결과물과 정규 편성 심의를 통과한 신규 혁신 교과목의 개발(강의계획서와 전용 교재·콘텐츠의 검수를 마친 것에 한한다) 건당 책임교원 5점, 참여교원 3점. 다만, 같은 교과목의 단순 강의·운영 실적(제1호)과는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한다.
3. G3 협력: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사회, 다른 대학 등 외부 주체와 함께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업 과제 건당 책임교원 5점, 참여교원 3점
4. G4 사업 운영 책임: 총장이 승인한 사업단 조직에 따라 6개월 이상 수행한 운영 역할에 대하여 사업단장 및 부단장 10점, 영역 책임교원(해당 영역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 및 성과관리 TF 위원 5점. 6개월 미만은 2분의 1을 인정하며, 이 점수는 <표 7>의 보직 점수와 별도로 인정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책임교원은 프로그램·과제당 1명으로 하고 참여교원은 결과보고서에 역할이 명시된 교원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수로 나누지 아니한다.

⑥ 취업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학과 취업률(집단):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과 취업률에 따라 <표 5>의 구간별 점수를 학과 교수 개인의 점수로 한다. 신설학과는 최초 졸업생 발생년도까지 전 소속학과의 점수를 반영하며, 해외취업자·개인창작활동종사자·1인 창(사)업자·프리랜서·농림어업종사자는 학과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의 현황자료에 따라 반영한다.
2. 지도학생 취업률(개인): 교수의 취업지도로 취업하여 당해 연도 대학정보공시 취업률에 포함된 지도학생 1인당 4점(지도학생의 소속학과와 무관)
3. 학생취업지도: 취업 관련 행사·프로그램 운영 건당 3점
4. 지역정주 취업 가산: 지도학생이 대학 소재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2점(취업 주관부서 확인)

⑦ 산업체 및 지역연계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산학협력협약: 산업체와 신규로 체결한 협약 업체당 3점, 기존 또는 신규 협약업체와의 공동 프로그램·현장실습·채용 연계·기술지도 등 실질 운영 실적 건당 2점(상한 6점). 협약업체와의 교류 실적은 주관부서가 관리한다.
2. 지역연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 민간단체 등 지산학관민연 협력 주체와의 협약 체결 건당 3점, 협약에 따른 실질 사업(지역특화 R&D,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빙랩,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과제 등) 수행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건당 7점

⑧ 주관부서는 제5항의 국고지원사업 연계 활동과 제8조 제7항의 지도 배정 등 참여 기회의 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매 참여자 모집 또는 배정 시 참여 기회를 공개 모집·배정하되 소속 학생이 없는 단위(교양과·자유전공 등)의 교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때에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영역

제10조(연구영역의 평가) ① 연구영역은 논문 및 저서·창작 및 실기 등으로 평가하며 연간 총 110점을 배정한다. 그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6>과 같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표 6> 연구영역 및 창작활동의 세부 항목 및 점수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단위	기준점수
논문	SCI(E)·SSCI·A&HCI·Scopus 등재 학술지	편당	20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편당	150
	한국 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편당	120
	일반 학술지	편당	70
	석사학위논문	편당	100
	박사학위논문	편당	200
저서	학술저서	권	100
	전공관련 번역서	권	80
	편저서	권	50
	교과서	권	50

항목	세 부 항 목		평가단위	기준점수
	저서 개정판		권	50
멀티미디어 교재개발	멀티미디어 교재/문제집 CD로 작성된 저서		권	80
학술발표	국제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50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50 2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초청강연		회당	100
	국내 전국규모 학술대회 논문발표(Full Text) 초록 및 구두발표		편당	20 10
문학	창작단행본, 작품집(신작30%이상)		권	100
	시, 동화, 수필, 평론		편	20
	소설, 장편동화, 시나리오, 희곡(원고지200매이상)			80
미술·디자인·음악·영상 물제작	개인전	국제	회당	150
		국내	회당	100
	단체전	국제	회당	60
		국내	회당	40
	공모전 (대한민국 미술대전,대한민국 산업디자인 대전, 대한민국패션대전 등)	대상	회당	150
		특선	회당	100
		입선	회당	50
	<신설>음반 출간	개인 음반 출간	건당	50
		2인 이상 공동 음반 출간	건당	25
	<신설>작곡	개인 작곡 발표회	건당	100
		2인 이상 작곡 발표회	건당	50
		합창곡 발표, 독주곡 발표, 영상음악·레코딩, 컴퓨터음악, 멀티미디어음악	건당	50
	<신설>공인된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음악제의 연출, 기획, 감독 또는 1/2이상 작곡, 편곡, 반주, 지휘	국제	회당	100
		국내	회당	50
체육	공인된 체육단체에서의 개인 연구 발표회	국제	회당	150
		국내	회당	100
	각종 경기의 심판	국제공인경기심판	회당	100
		전국규모 국내 공인경기심판	회당	50
	국제공인 심판자격 획득		건당	50

※ 국제학술지는 SCI(E)·SSCI·A&HCI·Scopus 등재지에 한하며,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유형(약탈적 학술지 등)은 제외한다.

② 연구영역의 취득 실적점수가 상한점수(110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제23조 제5항에 따라 특별가산점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6. 00. 00.>

제11조(연구영역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연구업적은 교원 개개인의 최초 임용 시의 전공 또는 담당전공교과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② 저서를 제외한 연구업적물에 장안대학교 소속임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기관으로 명시된 경우는 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대학교에 임용되기 전에 투고하고, 임용 후 출판한 업적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문학·예체능 영역의 업적은 저서 또는 논문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2조(실적물의 인정 환산율) 공동업적에 따른 참여자별 점수의 배분은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30%, 5인

이상은 1/n(저자수)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음반 출간과 작곡 항목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제13조(논문) ①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② 논문은 해당교수의 임용기간 또는 승진기간 내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장안대학교 소속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③ 회갑논문집, 기념논문집 등 부정기적인 논문집 수록논문과 토론집, 학술지에 게재된 기술논단 등 연구논문이 아닌 것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동일한 논문의 중복 게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석·박사학위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전공전환을 하여 새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해외학위의 경우에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저서) 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서적, CD 등을 말함]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전공과 관련된 강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는 실적만 인정한다. (개정 2020.3.1.)

② 동일제목의 저서는 배출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한다. (개정 2020.3.1.)

③ 본문의 내용이 200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만 저서로 인정하고, 15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미만은 70%로 인정한다. (개정 2020.3.1.)

④ 전공과 관련 없는 수상록, 회고록, 이미 논문으로 평가받은 논문 등의 모음집 형태의 단행본과 논설·시사컬럼 모음집, 그 밖에 서적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개정판의 경우 본문 내용의 개정정도가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5조(학술발표) ① 학술발표는 4인 이상의 논문발표자가 참여한 정식 학술대회에서의 논문발표 및 주제강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워크샵(집담회), 간담회, 공청회 및 연구회의 소단위 활동 등은 제외한다. 다만, 정식학술대회 성격의 워크샵·세미나의 논문발표는 학술발표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학회나 단체에서 주최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임용 기간 또는 승진기간 내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장안대학교 소속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6조(문학) ① 문학작품은 문학과 관련된 전공교수에 한하여 업적으로 인정한다.

② 이전에 업적으로 인정받은 공연작품을 문학작품으로 출간하거나, 이전에 인정받은 문학작품을 공연한 경우 공연작품과 출판작품을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③ 동일한 작품을 다른 공연(전시회, 발표회 등)에서 재발표한 경우에도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제17조(미술·디자인·음악·영상물제작 분야) ① 개인 전시·발표·음악회·영상물제작 등의 창작업적은 30% 이상의 신작으로 구성되어야만 업적으로 인정한다.

② 동일한 전시·발표·음악회·영상물제작 등에서 발표한 하나의 작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평점인 한 가지 역할만 인정한다.

③ 대중음악공연, 예술음악공연의 경우 유료로 티켓을 판매하는 예술공연에 한하여 반영한다. 단, 음반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음반 출간자로 장안대학교 문구가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100%의 점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의 점수만 인정한다. <신설 2024.12. 1.>

1. 국제음반 제작물은 외국 음반 제작사 레이블의 음반으로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국내음반 제작물은 음반협회나 영상협회 등록 음반사에서 제작한 음반으로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디지털 음반의 경우 음원 유통계약서 및 온라인 유료 음악사이트에 유통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8조(체육분야) 체육분야는 개인 발표회 및 각종 경기의 심판 등의 업적에 대해 평가한다.

제5장 봉사 영역

제19조(봉사영역의 평가부문) ① 봉사영역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학사참여도로 구분하며 총 100점을 배정한다.

② 봉사영역이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7>과 같으며 각 항목별 상한점수를 둔다.

③ 봉사영역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참여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2.1.1.)

<표 7> 봉사영역 (개정 2023.5.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구분	평가항목		상한점수	평가단위	기준점수
교내봉사	처장		50	개월	
	본부장, 부처장, 원장, 부원장, 관장, 센터장 등		40	개월	
	학과장. 학부장		30	개월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국고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포함)		10	건당	3
	대학발전 각종 프로젝트 참여(국고지원사업 TF 참여 포함)		10	건당	10
	산학협력단(처) 사업제안서 참여		10	건당	10
	진로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 방문		30	방문처당	3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 유치 또는 운영 참여		20	회	6
	학사학위 과정,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유치 실적		20	1인당	2
	학보 및 교지기고		10	1회당	3
	교육기부		10	1회당	2
	예비대학운영		10	1학기당	5
	시간제 등록생 유치		10	1명당	2
	학점은행제교과운영		10	교과목당	10
	성인학습학과 개설 및 운영		10	1개 학과당	10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1개당	5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채택		10	1회당	5
	국제교류 및 해외대학 협정체결		10	건당	5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 운영(수업 담당 교원·운영 학과장)		20	반당	10
	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 운영 – 토요일 대면수업 포함(수업 담당 교원·운영 학과장)		20	반당	10
	성인학습자 별도반·산업체 위탁과정 운영 – 온라인(수업 담당 교원)			반당	5
	자유학기제 참여		10	건당	2
	<제23조(특별가산점)으로 이동>				
교외봉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 임원		10	1개월당	1
	국내외 학술회의 좌장 및 패널, 사회자		10	회당	1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10	1일 8시간기준	2
	언론매체 기고, 방송매체 출연 등		10	회당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		10	1개월당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 학술단체의 연구, 심사, 평가단, 출제, 채점, 심사위원		10	회당	2
학사참여도	대학행사 (20점)	전체교수회의, 교수연수, 워크샵, 특강 등	20		20-(불참횟수×2)
	학과행사 (10점)	졸업식, 입학식, 과제전, 졸업전, MT, 축제, 체육대회, 신입생O.T, 학과회의 등	10		10-(불참횟수×2)

제20조(교내봉사) ① 행정보직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점수를 부여하되, 재직 개월수별로 계산하여 배점한다.

② 교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는 위원회 위촉현황을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하며, 국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운영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위원 참여를 포함한다. (개정 2022.1.1.), (개정 2026. 00. 00.)

③ <삭제 2022. 10. 7.>

④ 대학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별 임무, 과제 또는 TF팀 참여에 대해 무보수로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2.1.1.), (개정 2024.12. 1.)

⑤ 산학협력단(처) 사업제안서 참여는 산학협력단(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제안서 작성에 참여하여 채택된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2.1.1.)
⑥ 입학홍보활동은 학과 및 대학의 홍보로 신입생 유치와 관련된 진로 진학을 위한 고교 및 학원을 방문한 활동과 입시설명회 및 진로박람회를 유치 또는 운영에 참여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⑦ 학사학위 과정,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유치 실적은 등록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과 및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⑧ 학보 및 교지에 투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⑨ 교육기부활동은 대학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사업에 참여하여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과 교원의 전공을 활용하여 대학의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무보수로 참여하고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⑩ 예비대학 운영은 대학에서 주관하는 예비대학 운영사업이나 경기도교육청 주관 꿈의 대학 운영 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
⑪ 시간제 등록생 유치는 등록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과 및 주관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을 인정한다.
⑫ 학점은행제교과운영, 성인학습학과 개설 및 운영,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것에 한한다.
⑬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채택은 대학의 학사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후 실제 운영된 실적에 한한다. (개정 2022.1.1.)
⑭ 국제교류 및 해외대학 협정체결은 외국대학과 학점교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4.12. 1.)
⑮ 별도과정 운영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교원 중 해당 과정의 수업을 담당한 교원에게 인정하고, 운영 학과의 학과장에게는 수업 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정당 10점을 인정하되 수업 담당 점수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각 호의 상한점수는 20점으로 한다. <신설 2024.12. 1.>, (개정 2026. 00. 00.)
1. 외국인 유학생 별도반(반당 15명 이상): 반당 10점
2. 성인학습자 별도반 및 산업체 위탁과정(반당 10명 이상): 토요일 대면수업을 포함하여 운영한 경우 반당 10점, 온라인으로 운영한 경우 반당 5점

⑯ 자유학기제 참여는 대학에서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인정한다.
⑰ <제23조(특별가산점)③항으로 이동> (개정 2023. 5. 30.)

제21조(교외봉사)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의 임원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을 인정하며, 위촉기간을 확인하여 배점한다.
② 학술회의 및 좌장, 패널, 발표자, 사회자 등으로 참가한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2.1.1.)
③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인된 기관의 봉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언론매체 기고는 중앙 및 지방의 일간지투고, 국내외의 주요 정기간행물게재, 학술지 논평 및 서평 게재, 방송매체 출연 등의 활동을 평가하며, 매체에 소속 기관명이 노출되어야 하고 학과 홍보성 기사 제공 등은 제외 한다.
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1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을 인정하며, 위촉기간을 확인하여 배점한다. (개정 2022.1.1.)
⑥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공공단체, 학술단체의 연구, 심사, 평가단, 출제, 채점, 심사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2.1.1.)

제22조(학사참여도) ① 대학의 정책 및 방침에 대한 참여도 제고 및 정보공유의 확대를 목적으로 학사참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며 학사 참여도의 상한점수는 대학행사 20점, 학과 행사 10점으로 한다.
② 대학행사 참여도는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행사의 참석여부로 평가한다.
③ 학과행사 참여도는 학과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행사의 참석여부로 평가한다.
④ 수업 및 공식적 업무와 관련된 출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참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특별가산점) ① 특별가산점은 훈·포장, 교내표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등의 표창·상장 등 수상실적, 발전기금 기부·유치 실적 및 연구영역 상한점수 초과 실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3. 5. 30.), (개정 2026. 00. 00.)
② 수상실적에서 공로상, 감사장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30.)
<제20조(교내봉사)⑯항이동> ③ 발전기금은 교육, 연구, 장학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 기부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의 기부금품과 적립금을 말하며, 직접 기부하거나 산업체나 개인 등의 외부 기부를 유치하여 관련부서에서 확인된 실적에 대해 평가부서에서 연봉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

되, 공동유치의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세부 사항은 대학발전기금조성 및 관리규정, 대학발전기금조성 및 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5. 30.)
④ 특별가산점의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8>과 같다. (개정 2023. 5. 30.)
⑤ 연구영역의 취득 실적점수가 상한점수(110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매 40점당 5점을 가산하며, 가산점의 상한은 20점으로 한다. <신설 2026. 00. 00.>

<표 8> 특별가산점 (개정 2023. 5. 30.), (개정 2024.12. 1.), (개정 2026. . .)

항목	평가항목	평가단위	건당점수
특별가산점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외국정부기관, 국제저명기관 및 단체장 수상	건당	10
	교내 표창	건당	5
	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및 대학총장 수상	건당	5
	학술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수상	건당	3
	그 밖에 민간단체장 수상	건당	3
	발전기금 기부·유치	연봉액의 1%당	2(상한점수 20점)
	연구업적 상한점수(110점) 초과분	초과분 매 40점당	5 (상한점수 20점)

제24조(특별감점) ① 특별감점은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원의 복무위반 등 인사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② 특별감점의 세부항목과 기준은 <표 9>와 같다.
③ 특별감점 사유가 발생된 경우 교원 인사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내용과 아래 평가 항목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 감점 점수가 큰 점수를 반영한다.
⑤ 학기 중(학사일정상 개강일부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사적 국외여행은 교원 복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업 및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학기당 누계 15일(주말·공휴일을 포함한다)·2회 이내로 한다. 결강이 발생하여 보강이 필요한 여행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 .>
⑥ 국제학술대회 참가, 공동연구, 산학협력 등 공무 목적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국외여행은 공무 국외여행으로 분류하여 제5항의 누계 일수·횟수와 <표 9>의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00. 00.>

<표 9> 특별감점 (개정 2024.12. 1.), (개정 2026. 00. 00.)

항목	평가항목	평가단위	건당점수
특별감점	정직(중징계)	1회당	-20
	감봉(경징계)	1회당	-15
	견책(경징계)	1회당	-10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시정 요구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회당	-8
	대학의 장 또는 기구로부터 교수윤리위반 등으로 권고를 받은 경우	1회당	-5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내용이 확인된 경우	1회당	-5
	무단외부출강, 무단해외출국, 겸직금지위반, 국외여행 허가 기간 초과·허가 조건 위반(결강 발생) 등 복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	1회당	-5
	출결 또는 성적 임의 정정, 무단 휴보강 등 발생 시	1회당	-5
	수업시간 임의변경, 수업시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위반 발생 시	1회당	-3
	학사일정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 시<삭제>	1회당<삭제>	-3<삭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회당	-3

제6장 평가결과 및 활용

제25조(교원승진적용) 본 교수업적 평가 결과를 승진 및 재임용의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정년보장적용) 본 교수업적 평가 결과를 정년보장 및 정년트랙으로 변경의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우수교원포상) 본 교수업적 평가 결과를 우수교원 포상 및 혜택 부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8조(기타)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평가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4조는 업적평가 누락을 방지하고 평가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②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이라도 사안이 진행 중인 경우 최종결과를 발표한 해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부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소관 사무는 직제규정,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한여 산학협력처에서 승계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교무처, 학생지원처의 근무자는 별도 인사 명령시까지 산학협력처 소속 근무자로 본다.
제3조(종전의 사무행정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교무처, 학생지원처에서 시행된

문서 및 사무행정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한 산학협력처에서 시행된 사무행정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이 규정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정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 제1항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승계 이전에 소관 부서, 소관 부서장, 소관 부서직원이 소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승계 이후 부서의 부서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이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2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종전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이 시행일인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2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의 종전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은 2023학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3학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시행일이 2022년 10월 15일 이전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시행일이 2023년 10월 16일 이후인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은 2024학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2025년도 교수업적평가는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 이전의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시행규칙의 개정 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2026년 10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의 실적)부터 적용한다.